

모바일주소(WINC) 부가서비스 제공 지침

제정 2003. 11. 15
개정 2004. 04. 00
개정 2004. 08. 23
개정 2005. 07. 0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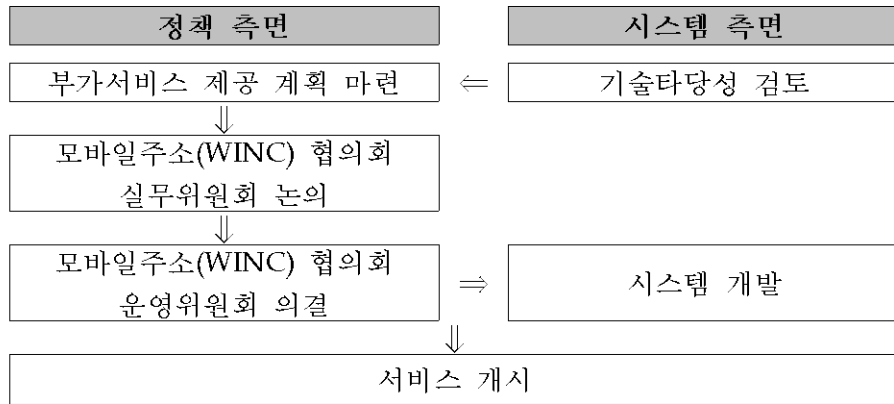
1. 개요

- 모바일주소(WINC) 등록관리규칙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부가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

제4조(등록된 모바일주소의 서비스 시행)

- 진흥원은 등록된 모바일주소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

2. 부가서비스 시행 절차



3. 수수료 : 무료

- 단,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상황(대외 업무협력, 기술개발등)의 경중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 책정 가능하며, 이경우 진흥원은 사전 공지를 통해 등록자의 혼란최소화 및 불필요한 산업중복투자 방지에 노력

4. 부가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

- 진흥원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,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후 부가서비스를 중단 가능
- 단, 부가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모바일주소(WINC) 등록자의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하고,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
- ※ 진흥원은 등록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부정확하여 사전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